경찰청 공고 제2023-21호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경 찰 청 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 분야 총 1,763명 선발)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1,763	593	193	42	60	19	19	9	9	86	20	83	59	79	86	115	163	119	9
남자	1,333	414	152	33	47	15	15	7	7	68	16	65	46	62	68	90	128	93	7
여자	365	114	41	9	13	4	4	2	2	18	4	18	13	17	18	25	35	26	2
101경비단 (남자)	65	65	-	-	-	-	-	-	-	-	-	-	-	-	-	-	-	-	-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 희망 시·도 경찰청 원서접수

2.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 24.(금) ~ 3. 6.(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3. 1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3. 25.(토)** 10:00 ~ 11:40(100분)	**3. 31.(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3. 3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4. 4.(화) ~ 4. 28.(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5. 1.(월) ~ 5. 19.(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25%)	면접시험	5. 19.(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5. 22.(월) ~ 6. 13.(화)	**6. 16.(금) 17:00**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3. 응시원서 접수

1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2 **접수 기간** : '23. 2. 24.(금) ~ 3. 6.(월)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3. 9.(목) ~ 3. 21.(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9.(목)** 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4.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1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3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023. 3. 20.(월)~24.(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0. 1. 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23. 3월부터** 사전등록하여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만 사전등록해야 함**
- '23. 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시기가 '23. 2월까지인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 내에 한해 유효한 성적으로서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023. 3. 20.(월)~24.(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5. 응시 자격

1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2. 1. 1. ~ 2005. 12. 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3 병역 : 제한 없음

4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각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함(단, 안과 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는 가능)
문 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붙임2】,【붙임2-1】,【붙임3】 참조

5 면허 및 가산점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시(2. 24.~3. 6.) 반드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 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6. 13.)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4. 28.)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5. 22.)까지 유효해야 함

6.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1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23. 3. 25.(토) 10:00 ~ 11:40

○ **장 소** :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공고(3. 17.)

○ **시험과목**

– **(능력검정시험)**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 헌법(20문항 50점), 형사법(40문항 100점), 경찰학(40문항 100점)

○ **헌법·형사법·경찰학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

과 목	출 제 비 율
헌 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합격자 결정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23. 4. 5.(수) ~ 12. 31.(일), 원서접수사이트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 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신용정보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무료 발급)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2. 11. 25.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 **답안지 열람**

– **(신청·방식)** 필기시험 성적 공개 후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신청, 응시한 시도청을 방문하여 1인당 10분 이내 답안지 사본 열람

– **(일시·장소)** 시도청별 지정 일시(2일)·시도청 청사 내 별도 장소

– **(열람절차)** 본인 확인(신분증) 및 휴대폰·카메라 등 일체 소지품 별도보관 조치 후 열람

※ 신청기간 및 시도청별 열람일시·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지

2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신체검사 합격 여부 판단(붙임 9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불합격)**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22년 제2차 경찰(순경) 공채시험부터 악력 점수는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 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3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4 4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단 계	평 가 요 소	배 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계	25점	

5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7. 임용 등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

○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인력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는 **10년간 전보를 제한함**

○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를 하여야 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자격 미비자의 응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형여권은 불가)만 인정**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 도중에 신원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은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에서만 현출되므로 신분증명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바. **원서접수 마감**은 **'23. 3. 6.(월)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까지('23. 4. 28. 기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23. 5. 22.) 2년 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붙임 7-1], [붙임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제 관련 등록한 영어시험 성적은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상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가산점으로도 인정됨

아. **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한국사·영어(검정제) 성적등록**은 반드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5호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가. 코로나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지정된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타 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나. **격리자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한 시·도청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시험장 운영 방법(案)

응시자 유형	시험장
입원치료 응시자	의료기관 내 별도 건물 또는 사전 지정된 별도 시험실
자가 또는 시설치료 중인 응시자	사전 지정된 별도 시험실 ※ 재택시험 불가

다.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 2023. 1. 27.

〈외출 전 준비사항〉

○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외출 사실 통보(이동경로 및 수단)합니다.

○ 외출 전,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보건소 안내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 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 종량제 봉투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합니다.

〈외출 중 주의사항〉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상시 상기하여 주의합니다.

○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 시험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주의사항〉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격리대상 수험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ㅇ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ㅇ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ㅇ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ㅇ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ㅇ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

나.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자기기·모자·방석·무릎담요·커블체어·교과서·노트·연습장·참고서**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복도 등)에 보관 하며,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소지·사용이 가능한 물품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귀마개*(이어플러그)

* (크기) 귀마개는 귓구멍을 막기에 적정한 크기만 허용되고, 그 크기가 과도한 경우는 불허, (형태)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함

-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 OFF → 개인 가방에 집어 넣기 → 가방을 복도 밖에 보관**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을 OFF하지 않아**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후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원칙과 절차

<사용 원칙>

1. 사용시간 : 10:30 ~ 11:20 (시험시작 3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횟수 :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1:2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아.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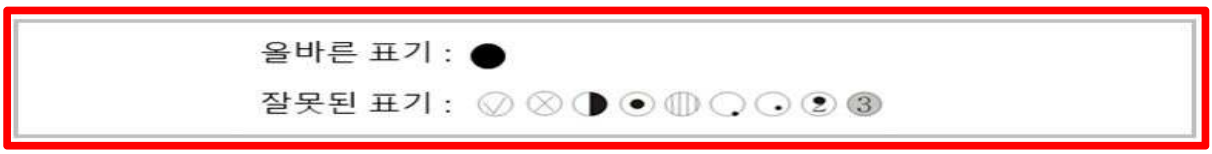
자.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차.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장 건물 현관 출입구가 폐쇄되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득점은 채점 기계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합니다.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반드시 아래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 올바른 표기 방식을 따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색깔 및 표기된 형태·크기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표기가 되어 있어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해당란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시험 중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의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운동장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22.11.25. 이후 발급)에 실시**(**붙임 9 양식 참조**)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병원이 아닌 의원 不可**)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시·도 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세종경찰청 교육계 (044) 559-2432 세종시 소담동 345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경찰청 교육계 (063) 280-83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경찰청 교육계 (054) 824-22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경찰청 교육계 (064) 798-3132 제주시 문연로 18

붙임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09:40:01부터) 해당 시험장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2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공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2-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3>

구분 / 부분별	신체조건
신장	170㎝ 이상이어야 한다.
체중	60kg 이상이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이어야 한다.(단, 교정시력 불가)

[비고]

위 항목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붙임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 다 리 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허 리 휘 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붙임4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초)	13.0이내	13.1 ~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42	41 ~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 ~52	51 ~46	45 ~40	39 ~34	33 ~28	27 ~23	22 ~18	17 ~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5.5이내	15.6 ~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 ~45	44 ~40	39 ~35	34 ~30	29 ~26	25 ~21	20 ~16	15 ~11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5 종목식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 계측기 2개, 출발신호기 1개 -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400m(200m) 타원형 트랙 / 계측기 2개 /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윗몸일으키기대 /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악력기 **다. 측정방법** -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붙임6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Ⅰ.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Ⅱ.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6-1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붙임6]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경찰공무원 임용령」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6-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_____	4. 응시번호:_____
5. 핸드폰:_____	6. 이메일: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

_____

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

_____

_____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_____ **전공분야**:_____

주소:_____

전화:_____ **팩스**:_____ **이메일**:_____

서명:_____ **날짜**: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 **날짜**: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 **날짜**: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7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단계별 시험에 가점비율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자격증 등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함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3조 5항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함

◦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참조(붙임7-1)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함

◦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일(4.28.) 까지임

붙임7-1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붙임7-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75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8 | **문제지 · 답안지 견본**

'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경행·사이버·안보·마약수사 -

목 차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 경채-

【헌 법】 일반공채(101경비단) ---------- 1
【형 사 법】 공통과목 ---------- 3
【경 찰 학】 공통과목 ---------- 5
【범 죄 학】 경찰행정 경채 ---------- 7

- 전의경 경채 -

【형 법】---------- 9
【형사소송법】---------- 11
【경 찰 학】---------- 13

- 사이버·안보·마약수사 -

【정보보호론】---------- 15
【시스템네트워크보안】---------- 17
【데이터베이스론】---------- 19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21
【디지털포렌식개론】---------- 23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9 9 9 9 9

한 글 성 명	
필적 감정용 기 재 란	(예시) 위 응시자와 동일함.

검 인	감독관확인란
검인 완 경찰청장	인

헌 법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형 사 법

문번	1	2	3	4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2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2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2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2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2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3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3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3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3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3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3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3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3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3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3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40	①	②	③	④

경 찰 학

문번	1	2	3	4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2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2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2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2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2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2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2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2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3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3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3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3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3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3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3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3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3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3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40	①	②	③	④

응시자 준수사항

□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③

2.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해당란에 정확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로 표기하고,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 해야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1매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됨)

4. 필적 감정용 기재
   (예시)와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편철이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은 반드시 기재된 과목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을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상단에 기재된 과목명에 따라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자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분야 코드번호】

분 야	번호
일반남자	01
일반여자	02
전의경경채	03
101단	04
경찰행정학과	05
법학	06
세무회계	07
사이버수사	81
교통공학	91

【응시지구(시·도) 코드번호】

응시지구	번호	응시지구	번호
경찰청	01	경기북부청	11
서울청	02	강원청	12
부산청	03	충북청	13
대구청	04	충남청	14
인천청	05	전북청	15
광주청	06	전남청	16
대전청	07	경북청	17
울산청	08	경남청	18
세종청	09	제주청	19
경기남부청	10		

붙임9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각		청력	좌: db 우: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사 시		
문 신			약물(TBPE) 검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3월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분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